

작품 내용

제 목	딸이 부른 동요를 세상에 들려주며, 저작권의 악보에서 공공누리를 읽다.
내 용	올해 초등학생이 된 첫째 딸은 노래를 곧잘 한다. 우리 집 거실 TV에는 항상 동요 프로그램이 틀어져 있다. 다섯 살 터울인 둘째 딸은 언니가 동요를 듣고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몸을 흔들기도 한다. 부모 마음이 그렇듯 딸이 흥미와 소질을 보이니, 나도 딸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기회를 찾게 되었다. 그러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에도 참가하고 딸을 동요대회 무대에 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재능을 뽑내고 가족의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딸이 부른 동요를 세상에 들려주는 과정에서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작권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다. 첫 번째 저작권 문제는 작년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제출할 가족 참여 영상을 만들 때 발생했다. 흡연 예방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딸이 평소 즐겨 부르던 동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가 떠올랐다. 공영방송인 KBS가 주최한 창작동요대회의 대상 곡이라 웬지 개사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제목은 동요 제목을 약간 바꾸어 「금연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짓고, 타르나 니코틴 같은 유해 물질을 피하고 어른들의 금연을 응원하자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꿨다. 나 스스로 ‘잘만 만들어지면 대상감이야!’라며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다. 아이는 개사한 노래를 금세 외워 씩씩하게 불렀고, 나는 그 목소리를 정성껏 녹음했다. 녹음 후에는 남편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여 아이와 함께 가사에 맞춰 율동하는 영상도 촬영했다. 영상 편집까지 거의 끝나 마무리만 남은 참이었다. 그런데 제출을 앞두고 공모 요강의 ‘저작권, 초상권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서늘한 생각이 떠올랐다. ‘남이 만든 노래의 가사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공모전에 내보내도 될까?’ 안일한 내 생각과 현실은 달랐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사해 출품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제출 마감은 불과 이틀 뒤였고, 한국동요작가협회를 통해 원작자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 본다 한들 제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며칠 동안 온 가족이 공들여 녹음하고 편집했던 노래와 영상을 포기해야만 했다. 시간이 없었기에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곰 세 마리」로 곡을 바꾸어 다시 작업하기로 했다. 아이는 “엄마, 나 다시 녹음해야 해? 예전 노래가 더 좋아.”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남편은 “그냥 이번 공모전은 포기해!”라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다. 기존의 율동 영상은 새 노래 길이에 맞게 편집하고, 노래만 새로 녹음하기로 했다. 한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 타인이 제작한 MR이나 편곡된 반주 악보에도

별도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예 마음 편하게 반주 없이 아이의 목소리만 담기로 했다. 노래만 새로 녹음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원곡의 한 음표를 쪼개 여러 가사를 붙이다 보니 딸이 버거워하며 부르기 싫다고 눈물을 흘렸다. 간식으로 달래며 겨우 녹음을 끝마쳤다.

영상 제목과 자막에 쓸 글꼴을 고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글꼴을 먼저 고려했다. 이때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돕는 ‘공공누리’ 제도와 이용 조건을 표시하는 유형 마크를 알게 되었다. 경기천년바탕체 등의 글꼴은 ‘공공누리 제1유형’ 이어서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동영상 끝에 사용한 글꼴의 출처를 밝히는 자막을 넣고 최종 출품했다. 제출한 영상으로 큰 상을 받았고,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사용할 때 먼저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지난 경험은 딸이 동요제 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 콩쿠르에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지만, 이번에 참가하는 동요제는 참가자가 직접 고품질의 MR을 준비해야 했다. 어린이 음악 프로그램인 KBS <누가 누가 잘하나>에 가창자로 출연하는 것이 꿈인 딸은 평소 연습할 때 ‘KBS 바다’의 오케스트라 동요 반주를 자주 활용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무료 동요 반주 음원을 마음껏 사용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있었고, 동요를 부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원을 비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연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동요제에 사용할 MR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KBS 바다’ 홈페이지에서 아이가 부를 곡인 「아빠의 자리」를 검색하고 내려받으려는 찰나, 지난 공모전에서 거의 다 만든 영상을 잊었던 일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음원 위에 표시된 이용 조건부터 확인했다. 그곳에는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가 붙어 있었다.

‘공공누리 제4유형’에는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내가 이 음원을 대회용으로 쓰려면 2절 분량에 맞게 편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4유형의 ‘변경 금지’ 조건에는 맞지 않았다. ‘비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만 보고 안심했다면, 나는 ‘변경 금지’라는 이용 조건을 놓친 채 음원을 편집해 제출할 뻔했다.

결국 나는 음원 다운로드를 깔끔하게 포기했다. 대신 전문 음원 제작 업체에 비용을 지급해 대회 규격에 맞는 MR을 새로 제작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다 만들어 놓고 나서야 뒤늦게 저작권 문제를 깨닫고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지만, 두 번째에는 이용 조건부터 확인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이 두 경험을 거치며 공공누리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특히 ‘공(公)’이라는 글자에 내가 얼마나 쉽게 안심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라면 이용 방식에도 큰 제한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것과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저작권이라는 악보에서 만나는 기호로 생각한다. 악보에는 음표만 있는 게 아니다. 썸머리나 도돌이표 같은 기호가 있

어야 연주자가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듯, 공공누리의 이용 조건도 마찬가지였다. 공공누리 유형 마크는 별도의 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어디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연주 기호였다. 그 기호를 잘 읽으면 어떤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저작물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지켜 사용해야 한다.

딸의 노래 실력은 그사이 더 발전하여, 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음원과 구분의 어려움 정도가 되었다. 내가 저작권을 바라보는 눈 역시 발전했다. 이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자료라고 해서 곧바로 마음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이용 조건을 살펴보고,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딸이 부른 동요를 세상에 들려주는 과정에서, 어느새 나는 악보 위의 작은 기호를 읽듯 공공누리 유형 마크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